

# 現行小作關係의 實態와 地主의 性格

金炳台\*

## 1. 머릿말

小作料는 地主 對 小作人의 收取關係의 物的 表現이므로 이에 대한 評疇的 充明을 위해서는 地主 對 小作人의 生產關係의 評疇的 充明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行 小作關係의 實態와 地主의 性格充明은 오늘날 區區하게 論議되고 있는 小作料의 評疇를 確定하는데 꼭 必要한 課題일 것이다.

1970年 12月 1日 現在로 調查된 農業센서스에 의하면 全體 農民의 33.5%가 借地農으로, 그리고 全國農地의 16.6%가 賃借地로 되어 있다고 報告되었고, 1974年 9月에 發刊된 韓國 가톨릭 農民會에서 發刊된 「농지 임차관계 실태조사 보고서」<sup>1)</sup>(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1973年 末 現在 全體 農民의 29.8%가 借地農으로, 그리고 全體 農地의 16.4%가 賃借地로 나타나 있다. 또한 農水產部의 報告에 의하면 1975년 末 全體 農家 2,379,058戶 가운데 26.8%가 借地農으로 되어있다<sup>2)</sup>. 調査機關과 調査時點이 서로 달라 이 數字에 根基를 두고 小作의 趨勢를 보기에는 困難하고 大體로 30% 內外의 農家가 借地農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은 確實하다. 憲法에서 小作을 禁止했고 農地改革으로 小作을 欲했으며 農地改革法에서 小作을 禁止하였는데도 이만큼 많은 數의 農家가 借地農으로 轉落되어 있다는 말은, 借地農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經濟的 理由는 憲法으로나 農地改革法이나 아니 그以上の 어떤 것이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借地農의 性格을 두고 한편에서는 封建의 小作關係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過度的 中間的 形態인 小農의 借地農 또는 分益農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資本制의 借地農이라고도 하고 있다.

現行 小作關係의 性格規定을 어떻게 하느냐는 韓國 農業의 앞날을 어떻게 보며 農業을 어느 方向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施策方向設定의 分岐點을 이루는 至極히 重要한局面으로서 소홀히 다를 수는 없는 問題이고 無責任한 獨斷으로서 曰可曰否하여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歸納的 方法으로서의 現行 小作의 實態分析과 함께 演繹的 方法에 立脚하여 現行 小作의 來歷을 알아 볼 必要가 있다.

## 2. 小作關係의 來歷

現行小作關係의 來歷을 알기 위하여 最小限 日帝下의 小作關係까지는 考察해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훌륭한 報告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行論上 必要한 것만 言及토록 하고 農地改革前後의 事情을 中心으로 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日帝下의 土地所有制度의 特徵을 半封建의 土地所有制度라고 하는 것은 封建的 地主와 그것에 對立하는 小作農의 關係가 土地關係의 基軸을 이루고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가

\* 建國大 農大 教授

1) 金炳台, 李佑宰, 金潤植 「농지 임차관계 실태조사 보고서」 1974.9. 韓國 가톨릭 農民회 刊

2) 忠南日報 1977. 1.21日字

基本的으로는 封建의인 關係이면서 法律的, 外形的으로는 平等하고 資本主義 經濟原則인 自由契約에 의하여 小作關係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가 基本的으로 封建의인 것이었다고 말하는 根據는 1911~18年에 日人們에 의해서 遂行한 土地調查事業과 그 후에 나타나고 있었던 小作慣行에 의해서 考證된다.

즉 土地調查事業으로 舊韓國時代의 封建支配層인 收租權者를 土地의 私的 所有權者로 確定하고 實事上의 耕作者인 農民을 小作人으로 하여 法律上으로는 平等하고 自由契約에 의하여 小作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粉飾 處理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는 內容面에 있어서 舊韓國時代의 封建支配層과 農民의 關係에 何等의 變化도 없이 오히려 法律의으로 더욱 確固히 된채 그대로 維持 繼續되고 小作人에게는 前期의 資本과 日本의 軍國主義의 收奪이 겹쳐 더욱 困窮한 生活을 해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前期의 資本의 土地蠶食에 의한 寄生地主의 出現으로 小作人의 數와 小作地의 擴大는 더욱 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표 1, 표 2>.

그리하여 農業生產力의 發展은 沮害되고 農業에 있어서의 小商品生產이라는 資本制生產의 基礎的 條件을 成熟시키는 歷史過程의 進展을 不可能하게 하였다.

<표 1> 農民의 小作農化 傾向 (單位: 千戶)

	1913~17	1918~22	1923~27	1928~32	1933~37	1943
自 作 農	555 (21.7)	529 (20.4)	529 (20.2)	497 (18.3)	547 (19.2)	536 (18.5)
自作兼小作農	991 (38.8)	1,015 (39.0)	920 (35.1)	853 (31.5)	732 (25.6)	984 (34.7)
小 作 農	1,008 (38.8)	1,058 (40.6)	1,172 (44.7)	1,362 (50.2)	1,577 (55.2)	1,481 (51.2)
計	2,554 (100.0)	2,602 (100.0)	2,621 (100.0)	2,712 (100.0)	2,856 (100.0)	2,892 (100.0)

資料: 1. 鈴木武夫, 「朝鮮の經濟」

2. 1943年은 農협중앙회간 「韓國農政二十年史」, p.848에 의해 算出  
(註) 1913~37年은 南北韓通算

<표 2> 農地의 小作地化 傾向 (單位: 千ha)

各 5個年 平均	1910~12	1918~1922	1923~1927	1928~32	1933~37	1937
自 作 地	1,603	2,143	2,133	1,988	1,931	1,905
小 作 地(A)	1,793	2,188	2,231	2,471	2,570	2,620
計(B)	3,397	4,325	4,364	4,459	4,501	4,525
A/B%	53	50	51	55	57	58

資料: 1910~1937年

鈴木武夫, 「朝鮮の經濟」

※南北韓通算

日帝下 韓國農民들은 封建寄生地主들과 日本 軍國主義의 收奪과 壓制에 대하여 많은 抵抗을 보여 小作爭議는 廣範하게 벤져갔다. 日本 軍國主義는 이를 가차없이 탄압하였는데 8.15解放으로 農民들의 土地改革에 대한 要求는 衝天하였다. 이는 때마침 左翼勢力의 運動으로 轉化되어 갔다.

1946年 2月 美國務省에 의하여 土地改革에 대한 方針이 示達되고 同年 3月 5日에는 北韓에서 無償沒收 無償分配라는 方式에 의하여 土地改革이 斷行되자 土地改革에 대한 農民의 要求는 더욱 激烈하게 展開되어 갔다. 當時의 美軍政은 그의 權限下에 놓인 日人所有農地에 대한 分配計劃을樹立하는 한편 軍政下의 立法議院에 대하여 韓人地主 所有農地에 대하여 農地改革을 종용하였다. 大部分이 地主出身이었던 立法議員들은 이를 미루어 왔다. 美軍政에서는 1946年 10月 5일에 一次的으로 小作料를 引下하였고<sup>3)</sup> 二次的으로 1948年 3月 22일 彙屬農地에 대하여 分配를 斷行하였다<sup>4)</sup>.

韓國의 農地改革은 政府가樹立된翌年인 1949年 6月에야 法이公布되었으나 施行令이 마련되지 않은 채 9個月을 經過하고 1950年 3月에 施行令과 함께 農地改革事業은着手되었다.

農地改革이 이같이 遲延되는 동안에 農地改革이 있을 것으로豫想한 地主들은 小作을 解體하고 自作을 强行하는가 하면 土地를 放賣하고 또는 事實上의 小作을 自作으로 假裝하기 시작하였다.

그結果는 純小作農家 戶數에 있어서 1945年末 現在 1,009,604戶(50.2%)이던 것이 46년에는 923,686戶(44.6%), 47년에는 914,369戶(42.5%), 49년에는 激減하여 526,195戶(21%)로 되고 自作은大幅으로 늘어 1945年 284,509戶(14.2%)이던 것이 46年에는 337,271戶(16.3%), 1947年에는 401,248(18.6%), 1949年에는 925,218戶(37%)로 激增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표 3> 8.15前後의 韓國의 自小作別 農家戶數 (單位: 戶)

區 分	1944	1945	1946	1947	1949
地主兼自作	276,733 (14.8)	284,509 (14.2)	337,271 (16.3)	401,248 (18.6)	925,218 (37)
自作兼小作	691,949 (37.2)	716,080 (35.6)	810,181 (39.1)	833,944 (38.8)	1,022,420 (42)
純小作	890,752 (48.0)	1,009,604 (50.2)	923,686 (44.6)	914,369 (42.5)	526,195 (21)
計	1,859,434 (100.0)	2,010,193 (100.0)	2,071,138 (100.0)	2,149,561 (100.0)	2,473,833 (100.0)

資料: 1944~46年 韓國銀行, 「經濟年鑑」 1948

1947年 農務部 農產局(1948) 出處「土地改革史」 pp358~359에 의거 作成.

1949年 同上 pp. 495

(表의項目에는 地主兼自作으로 되어 있으나 純地主의 數는 1947年の 경우 43,312戶인 바 自作의 increase趨勢을 보는데 있어서는 地主가 包含되었다고 하더라도 別로 支障이 없으며 事實上 地主의 數가 減少되고 있는 터이니 自作의 increase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小作農家 戶數 激減과 아울러 小作地面積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年에는 小作地가 1,325千ha(60.4%)이던 것이 1949年에는 830千ha(40.1%)로 激減되고 反對로 自作地는 1947년 868千ha(39.6%)이던 것이 1949年에는 1,240千ha (59.9%)로 激增하였다 것이다.

3) 軍政法令 第9號 (1945年 10月 10日)

4) 南朝鮮 過渡政府法令 第173號 (1948年 3月 22日)

&lt;표 4&gt; 8.15前後의 小作地 狀況(單位: 千ha)

	1947	1949
自 作 地	868	1,240
小 作 地(A)	1,325	830
計(B)	2,193	2,070
A/B%	60.4	40.1

註) 1947年은 年末·資料: 農務部 農產局, 出處, 「토지개혁사」 상권 1970. p359.

1949年은 6月末 現在·資料: 農林部, 農地管理局, 出處, 韓國產業銀行, 「調查月報」 No. 8, 1955

&lt;표 5&gt; 受配農家戶數 및 分配面積

(單位: 農家: 戶數)  
面積: 段步)

1957. 12. 31 現在

區 分	受配農家	分 配 面 積		計
		畠	田	
一般農地	952,731	1,914,111	764,667	2,678,778
歸屬農地	596,801	1,609,986	411,452	2,021,438
計	1,549,532	3,524,097	1,176,119	4,700,216

資料: 農協中央會, 「韓國農政二十年史」, 1965. p.98에 의거 作成

그리하여 1949년 6月末 現在 自作으로서 3ha를 超過하는 農地를 包含한 要買上農地는 601千ha인 바 分配豫定 面積은 여기에 歸屬農地 232千ha를 合하여 833千ha]였다.

그러나 1957년 農地改革事業을 마무리한 結果를 보면 實제로 分配된 農地는 470千ha에 불과하였으니, <표 5> 農地改革法이 公布되어 施行令이 나올때까지의 9個月 동안 이같은 結果가 빚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農地改革의 目的은 一般的으로는 다음의 3 가지로 要約된다.

(1) 生產力의 增進

(2) 小作農에 대한 封建的 束縛으로 부터의 解放

(3) 寄生的 資本의 產業資本化에 의한 工業化促進이 그린 것이다.

그런데 韓國의 경우는 이와 같은 一般的의 目的意識이 뚜렷이 定立되지 못한 채 推進되어졌다는 데에 韓國農地改革의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8.15후의 韓國의 사정은 이를 主體的 立場에서 推進해 갈만한 處地에 놓여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의 對占領地 施策과 反共의 보루구축이란 것이 強하게 意識되었을 뿐 農地改革 施行者에게 그 本來의 目的 意識은 薄弱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農地改革을 不徹底하게 만들었고 農地改革後 小作이 再生되거나 新生되는 根本原因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論議하려고 하는 것은 農地改革이 失敗했다거나 成功했다거나 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農地改革이 成功했다고 하더라도 農地改革은 農家經濟向上과 農業發展에 全能的 處方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農地改革으로 낡은 小作制가 打破되어 營農의近代化, 農業生產力 增進의 土台가 마련 되었다고 하더라도 耕種法의 改善, 農業協同組織의 整備, 農業

金融財政面의 支援, 價格政策과 流通構造의 整備등의 自作小農體制에 알맞는 새로운 질서가 後續되지 않으면 그 實效가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낡은 小作制의 再生을 가져 온다는 것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農地改革 施行의 目的意識이 薄弱하였던 關係로 해서 對象面積에 있어서 또 對象人員에 있어서 效果가 半減되었고 後續措置의 缺如로 小作이新生 또는 再生되었다고 하더라도新生 또는 再生된 小作農에 대하여 封建的束縛이 없어진 것만은 事實이다. 지금 韓國農村에 나타나고 있는 小作關係를 두고 封建的小作의 再生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뒤에서도 고찰될 것이지만 이것은 封建制에서 一但 벗어나서 資本制의 貸借關係으로 轉移하는 過渡的段階인 小農的借地農, 혹은 分益小作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現在 韓國農村에 小作이 있고 地主가 있으며 地主도 在村地主가 있고 不在地主가 있다. 그리하여 小作料率도 日帝下의 그것과 비슷한 年年의 生產物에 대하여 現物로 50%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日帝下의 地主와 同一한 것은 아니다. 일제하의 지주들은 李朝時代의 收租權者의 同一體로서 封建的支配를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 前期의 資本에 의한 封建的 土地所有에 대한 蠶食으로 이루어진 寄生地主도 그와 同質의인 것이었다. 小作料收入에 의하여 그의 全生計를 解決하고 蕩財를 하며 그로써 事業資金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地主들은 農地改革으로 大大的으로 没落하였다. 즉 糧穀의 政府收納價格이 市價의 1/3內外로 定해짐으로써 小作農民의 地價償還의 負擔은 커지만 地主에 대한 地價補償은 實地의 1/3內外로 減縮되었다.

改革前의 小作農은 農地改革으로 年平作의 15割을 5년간 現物로 政府에 均分償還하고 政府는 地主에게 現物로 表示된 地價證券을 交付하고 補償時의 金額換算은 政府가 定한 收納價格에 의하였으므로 地主에 대한 補償은 圓滿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結果가 되었다. 그리하여 事業體라도 가지고 있던 極小數의 巨大 地主를 除外하고는 寄生的 資本의 產業資本化로 工業化促進을 꾀하였던 當初의 目的是 無爲로 끝났으며 그리하여 大部分의 地主들은 地價補償金이 生活資金에도 未恰하여 大量의 没落을 가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現地主는 大部分 分割地 所有의 蠶食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거나 農地改革當時 自作 또는 自營으로 假裝하였던 事實上의 小作이 露出된 것으로 그 規模가 零細하여 小作料收入으로서는 生計의 補助的 구실 밖에는 못하고 日帝下 地主中 封建性이 가장 강한 不在地主는 오늘에 있어서는 小作料取得이 目的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賯蓄手段으로서, 또는 農村의 親知들에게 生計補助의 뜻을 담아 農土를 사주는 備給生活者, 商工人이 많아 그 性格은 一變되어 있다. 在村地主라 할지라도 小作人과 地主사이에는 身分의 隸從관계는 全然 없다. 小作期間이 大體로 1年內로 되어 있는 現小作慣行에서는 身分의 主從關係가 成立될 겨를이 없다. 한글의 헌법과 農地改革法이 小作을 禁止하고 있는 가운데 再生된 小作인지라 地主는 小作人들에게 強力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小作權의 保護를 받을 수 없게 되고 小作期間도 大部分이 1년 내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借地農은 不安하고 生產은 困窮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封建的束縛에 의한 것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운借地農과 함께 大部分이 自作農으로 된 韓國農民은 自己所有의 土地에서 自己所有의 農具와 家族勞動에 의하여 자유로운 耕作을 함에 따라 小生產의 經營方式 限界內에서 만이라도 農業生產은 마땅히 增進되어야 할 것이고 農村社會는 맑고 明朗한 雾靄氣로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地價償還負擔의 過重(平年作의 15割을 5年間 償還)과 6.25動亂으로 因한 人的,

物의 資源의 破壞戰爭遂行을 위한 農民의 過重한 土地收得稅, 剩餘農產物過多導入에 의한 農產物價格의 下落등은 農業生產增大에 逆機能을 하였으며 특히 協同組合組織의 缺如로 前期的 資本으로 부터의 시달림은 여기에 過渡的 寄生地主制의 成立<sup>5)</sup>을 必然化하고 生產性의 發展을 沮害하여 왔다.

1951년부터 實施된 土地收得稅는 當時의 租稅總額에 대한 比重이 51년에 21.5%, 52년에 30.4%, 53년에 22.8%, 54년에 14.7%, 57년에 23.8%, 58년에 14.0%, 59년에 8.9%, 60년에 6.1%로 되어 있으나, 市價의 1/3內外 밖에 안되는 低價格으로 評價된 現物稅인 土地收得稅가 市價대로 評價되었다면 租稅總額에 대한 比重은 그의 3倍가 된다는 밑이 된다. 物量的으로 볼 때 總生產量에 대하여 54년 11.8%, 57년 8.1%, 58년 8.5%, 59년 8.3%, 60년 6.9%의 比重을 차지하였는데 政府는 農民들의 이같은 犠牲에 의하여 6.25통일 중의 「인프레」를 收拾할 수 있었고 間接利益를 調達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이와 함께 주요 農產物에 대한 계속된 低價格政策으로 인하여 農業의 資本制的 經營의

5) 寄生地主制 혹은 寄生地主의 土地所有라고 하는範疇는 元來 前期資本의 土地所有라고 하는 程度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거나 이 것은 한편에 地主經營의 形態에 對立함과 同時に 다른 한편으로는 前期의 商人 高利貸資本의 轉化形態라고 하는 意味에서 쓰여지고 있고 前期의 資本에 의한 土地所有의 靜食이 封建의 土地所有를 靜食하였는가에 따라 封建의 寄生地主와 小農의 借地農業者를 對極에 두는 過渡的 中間的 形態로서의 過渡的 寄生地主로 區分한다.

「負債를 지 奴隸所有者 또는 封建領主는 보다 많이 收奪한다. 그理由는 그自身이 보다 많이 受奪當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高利貸農業者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高利貸農業者自身이 古代로마의 騎士처럼 土地所有者 또는 奴隸所有者로 된다. 낡은 摘取者의 收奪은 大部分政治의 權力手段이었으므로 貸借 척전 家父長의 이었던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보다 苛酷한, 보다 貨幣欲이 둔 猥富가 出現한다. 그러나 生產樣式 그 自體는 變化하지 않는다.」①

이것은 前期의 資本의 封建領主에 吸着하여 그 地代徵收權을 말하자면 위에서부터 靜食한 形態이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金俊輔敎授를 비롯한 國內 몇몇 學者가 規定하는 日帝下 小作農의 近代的性格을 잘못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形成되는 새로운 高利貸의 土地所有는 「生產樣式 그 自體를 變化하지 않는 것」으로서 日帝下의 韓國農村의 寄生地主制②와 같이 그 自體封建의 性質이다. 우리는 日帝下에서 이미 經驗한 바이지만 前期의 資本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小農民 및 小手工業者를 收奪하여 그 労動請條件를 빼앗아가는 形態가 있다. 寄生地主의 土地所有의 形成에 있어서 封建領土의 地代徵收權에의 吸着과 아울러 農民으로 부터의 土地收奪은 特히 基本의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즉 한편에 있어서는 商人資本을 構杆으로 하는 商品經濟의 侵透에 따라서 封建社會의 小經營의 生產樣式이 發展하여 實事上의 土地所有가 점차로 自營的小經營으로서 經濟의 意義를 높혀 거기에 대한 새로운 摘取의 餘地가 發生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農民의 商品生產의 發展 그 自體가 農民의 貨幣需要를 둘이고 日帝와 債務封建地主의 收奪強化와 더불어 不可避의로 隸從의인 自管農民들을 高利貸資本의 手中에 떨어뜨리고 土地所有乃至 生產手段을 잃어 가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資本主義의 生產樣式이 實存하면서 勞動에 대한 廣範한 市場이 缺如되어 있는 그러한 狀況아래에서는 實事上의 分割地所有를 衰失한 農民들은 곧바로 資本主義의 勞動者로 轉化할 길이 없어 衰失한 分割地所有를 高利貸의 條件에서 다시 밀려 耕作을繼續해 가는 小農의 借地農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寄生地主制 또한 「生產樣式 그 自體를 變化시키지 않아서」 農民의 土地所有라는 過渡的 性格 그 자체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이것은 過渡의 寄生地主制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分割地所有의 亞種으로서 分割地所有의 經濟法則에 따르는 것이다.

더구나 農地改革後新生 또는 再生된 小作이란 것은 分割地所有의 壞滅體로서의 小農의 借地農의 特色을 그대로 보여 주고 새로된 地主는 封建的地主가 아닌 이 過渡의 寄生地主라는 그 特徵을 如實히 나타내주고 있다.

①『資本論』, 第三卷 p.644

② 日帝下의 韓國農村의 地主는 李朝時代의 收租權者에 대하여 土地의 私的所有權을 封建의 으로 確立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大宗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封建支配層과 直接生產者사이의 生產關係에 契約由는 形式的節次일 뿐이고, 基本의 으로 변함이 없었고 일제하에서 새로이誕生되는 寄生地主는 封建의 生產樣式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에 便乘하였다.

6) 農協中央會, 「農政二十年史」 1965. pp.35~43

進展이 沮害되어 家族勞動力의 限度를 넘는 自作農은 土地를 雇傭勞動力에 의해 이를 資本制의으로 經營하는 代身에 借地農에 貸與하여 地主로서 安住한다. 한편으로는 長大한 農村過剩人口는 勞動力의 消費處가 없으므로써 農村에 머물러 他人의 土地를 賃借하는 借地農이 된 것이다.

해방후 30년간 耕作規模別農家戶數의 分布를 볼 때 農民層의 分解의 進展을 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표 6>.

<표 6>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1)

단위: 정 보

년 별	합 계			3 단 보 미 만			3~5 단 보		
	호 수	%	면 적	호 수	%	면 적	호 수	%	면 적
1945	2,137,288	100	2,225,000	—	—	—	723,810	33.9	310,000
1951	2,183,930	100	—	—	—	—	932,615	42.7	—
1952	2,233,562	100	—	—	—	—	1,055,930	45.0	—
1953	2,249,132	100	—	—	—	—	1,011,032	45.0	—
1954	2,234,458	100	—	—	—	—	991,951	44.4	—
1955	2,218,185	100	1,984,455.3	420,402	19.0	114,897.3	534,414	24.1	242,307.7
1956	2,200,549	100	1,967,123.3	419,660	19.1	113,815.3	522,530	23.7	232,051.8
1957	2,218,941	100	2,010,020.6	421,936	19.1	112,0655.3	523,293	23.7	235,462.8
1958	2,218,323	100	2,017,900.0	421,408	19.0	107,133.5	515,313	23.2	228,220.4
1959	2,261,413	100	2,020,791.6	430,132	18.8	105,528.4	528,038	23.3	230,377.0
1960	2,349,506	100	2,026,914.0	463,415	19.7	106,524.1	545,209	23.2	230,521.0
1961	2,627,116	100	2,039,109.5	440,329	18.9	103,834.3	506,361	21.8	216,718.0
1962	2,469,453	100	2,066,013.5	490,349	19.9	110,289.8	522,986	21.2	218,164.7
1963	1,415,593	100	2,079,566.9	489,653	20.3	114,335.4	519,585	21.5	220,663.8
1964	2,450,308	100	2,178,238.4	466,098	19.0	110,270.9	512,689	21.0	217,459.5
1965	2,506,899	100	2,260,236.8	430,825	16.2	86,354.9	470,015	18.7	194,862.1
1966	2,540,274	100	2,280,692.0	430,231	16.9	83,509.1	463,654	18.7	190,688.2
1967	2,586,684	100	2,296,920.3	459,780	17.8	82,782.1	459,586	17.8	188,245.6
1968	2,578,526	100	2,275,120.4	467,454	18.1	79,039.1	477,820	17.4	183,573.9
1969	2,546,244	100	2,252,131.1	458,921	18.0	77,245.6	442,860	17.4	181,128.1
1970	2,483,318	100	2,136,619.3	463,010	18.6	72,164.7	395,902	15.9	155,857.8
1971	2,481,526	100	2,167,477.4	470,336	19.0	74,310.7	423,437	17.1	172,817.6
1972	2,451,844	100	2,123,493.1	471,303	19.3	73,804.1	415,300	16.9	168,824.1
1973	2,450,277	100	2,125,394.3	462,190	18.9	72,240.9	417,170	17.0	169,032.3
1974	2,381,200	100	2,107,260.5	417,053	17.5	61,680.3	368,366	15.5	148,673.4

##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 (2)

(표 6 계속)

단위 : 정보

년	5 단 보~1정 보			1~2 정 보			2~3 정 보			3 정 보 이상		
	별 호수	%	면적	호수	%	면적	호수	%	면적	호수	%	면적
45	735,510	34.4	622,000	458,234	21.4	752,000	128,483	6.0	358,000	34,777	1.6	183,000
51	781,910	35.8	—	372,970	17.1	—	93,401	4.3	—	3,034	0.1	—
52	770,021	34.5	—	363,318	16.3	—	91,255	4.1	—	3,038	0.1	—
53	768,600	34.1	—	370,848	16.5	—	95,722	4.3	—	2,930	0.1	—
54	771,762	34.5	—	374,465	16.8	—	92,709	4.1	—	3,571	0.2	—
55	689,745	31.1	579,118	9445,632	20.1	712,268.0	122,441	5.5	315,177.8	5,551	0.2	20,688.6
56	676,108	30.7	560,688	8448,381	20.4	714,887.5	125,113.5	7	315,365.2	8,157	0.4	30,319.7
57	672,328	30.4	569,765	31455,855	20.6	733,087.5	129,574.5	8	329,547.7	7,923	0.4	29,512.0
58	673,900	30.1	562,352	4,463,323	20.9	740,840.5	137,900	6.2	355,279.5	6,479	0.3	23,973.6
59	688,303	30.1	563,456.7	7474,247	20.9	744,996.6	139,810.6	2	351,899.0	6,889	0.4	24,544.5
60	706,689	30.1	565,711.1	485,933	20.7	749,090.4	141,371.6	0	350,218.0	6,889	0.3	24,846.4
61	740,999	31.8	585,357.2	490,638	21.1	756,683.9	142,680.6	1	354,654.7	6,060	0.3	21,831.4
62	803,162	32.5	612,432.6	505,093	20.5	752,359.0	140,598.5	7	354,602.2	7,265	0.3	27,165.2
63	761,015	31.5	601,337.3	497,398	20.6	760,160.2	138,999.5	8	348,350.0	8,943	0.4	34,120.2
64	782,499	32.0	617,124.9	525,672	21.0	802,442.2	147,835.6	3	371,053.1	15,515	1.0	59,885.8
65	793,864	31.7	598,044.9	643,305	25.7	915,106.1	139,599.5	6	346,020.6	29,291	1.2	114,867.2
66	818,121	22.7	609,299.7	656,957	25.9	920,734.6	136,713.5	4	334,161.3	34,598	1.4	137,220.4
67	829,258	32.1	614,982.8	665,099	25.7	926,018.0	134,511.5	3	326,215.0	38,648	1.5	153,573.7
68	820,173	31.8	603,338.2	689,297	26.0	921,790.7	133,156.5	2	319,706.9	40,626	1.6	162,696.1
69	807,442	31.7	697,032.5	667,617	26.2	918,637.9	130,483.5	1	314,525.3	39,421	1.5	158,589.1
70	824,347	33.2	583,433.1	639,396	25.7	867,288.6	126,391.5	0	290,406.3	37,299	1.5	156,559.1
71	786,268	31.7	587,175.5	645,156	26.0	890,645.7	120,116.4	8	290,330.9	36,212	1.5	107,306.5
72	776,818	31.7	577,779.7	636,710	26.0	874,970.1	116,519.4	8	280,536.8	35,196.1	4	142,762.1
73	771,028	31.5	5532,290.1	664,633	26.3	881,250.6	118,202.4	8	280,477.5	37,054	1.5	148,102.9
74	808,704	34.0	595,449.3	631,123	26.5	868,578.3	118,663.5	0	282,041.2	37,291	1.6	150,838.0

## 3. 小作農의 實態

現在의 小作農은 以上과 같은 來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小作農이라고 하여 同質의 것으로 處理될 수는 없다. 現行 小作農의 類型은 人畠, 고등채소, 花卉, 苗木등 栽培者에게서 볼 수 있는 資本制의 借地農과 地主가 經營資本의 一部를 대는 分益農 그리고 小農의 借地農, 扉只農등이 그것이다. 小農의 借地農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封建的 遺制를 아직도 많이 담고 自給的 營農에 머물러 있는 奧地의 小農의 借地農과 商業的 農業이 어느 程度 進展된 韓國의 普遍의 農村 마을의 小農의 借地農이 있다. 現韓國農村은 商業的 農業이 어느 程度 進展된 主穀耕作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普遍의이고 一般的이다. 여기서 舉論되는 小作農의 實態도 韓國農村의 特殊한 形態의 小作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에 基礎를 두고 現段階 小作의 過渡的 性格을 考察하려 한다. 調查對象이 된普遍의 韓國農村이라 할지라도 調查에 나타난 小作農의 種類는 小作農(純小作, 小自作, 自小作), 扉只農, 位土耕作農으로 나타나고 扉只農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封建的 身分의 隸從關係를 지닌 扉只農과 近代的 屬性을 지닌 地主의 經營下의 扉只農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것이 區分되지 않고 하나로 둑어졌다. 그 理由는 그 數가 너무 적어 區分해서 考察할만한 意義가 없고 번거로움을避하기 위해서였다.

다음〈표 7〉을 보면 調查對象 70個部落의 總農戶數 4,554戶中 借地農은 29.8%인 1,3

59戶인데 屬只農이 1.1%, 位土耕作農 5.0%이고, 小作農은 25.5%이다. 小作農 가운데 純小作農은 28.5%이고 小自作農 27.8% 自小作農 43.6%(<표 8>)로 되어 한편에서 自作을 하면서 勞動力이 남아도는 限度內에서 他人의 土地를 耕作하는 小作農가가 71.4%로 되어 있다. 農地改革後에는 그 數가 이보다 훨씬 적다가 차차 늘어 났다는 事實과 함께 이것은 韓國의 小作이 分割地所有의 蠶食에 의해서 進行되고 있는 事實을 歷歷히 알려 주고 있다. 또 借地農들이 借用地에서 그의 全勞動力を 投下하여 그의 全生活을 거기에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아도는 家族勞動의 一部를 借用地에 投入하여 그의 生活의 一部

&lt;표 7&gt; 조사대상 부락농가 총수에 대한 임차농가 종류별 구성

단위 : 호

1976年末 ( )내 %

조사대상 부 락 수	조사대상 부 락 의 농 가 수	① 소 작			② 고 지 위 토	③ 토	((1)+(2)) 소작농가	((1)+(3)) 소작농가	((1)+(2)+ ③)) 임 차 농 가 수	
		소 작 농 가 수	소 작 농 가 수	자 자 농 가 수						
70개부락 (62개군)	4,554 (25.5)	1,160 (7.3)	331 (7.1)	323 (11.1)	506 (1.1)	15 - (1.1)	227 - (5.0)	1,192 (26.2)	1,327 (29.1)	1,359 (29.8)
비 고	( )내 숫자는 조사대상 부락의 농가수에 대한 %임. ○내 숫자는 소작농과 중복된 것임.									

&lt;표 8&gt; 소작종류별구성

단위 : 호

( )내 %

소 작 농 총 수	순 소 작 농	소 자 작 농	자 소 작 농
1,160(100.0)	331(28.5)	323(27.8)	506(43.6)

를 解決하고 나머지 勞動은 아무런 制限을 받지 않는 自作地에서 아니면 보다 더 自由로 운 다른 兼業에 의해서 解決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표 9>를 보면 借地農의 借用地 平均 面積은 1,562坪으로 5段步內外인데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家計를 꾸리기가 어렵고, 自作地 經營이나 他兼業에 의해서 補完되지 않으면 안되며 때문이다. 借地農이 이같이 아무런 制限이 없는 自作地 또는 다른 自由로운 兼業에 從事하여 生活의 一部를 解決하고 借用地에 生活의 全部를 얹매고 있지 않다는 事實은 小作料가 剩餘價值의 通例의 支配的形態인 封建地代가 아님을 如實히 말해 줌과 同時に 現在의 借地農이 封建的 隸從關係를 拂式하였다고 하는 重要한 指標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賃借者別 部落內 居住年數를 알려주는 <표 10>과 借地農의 種類別 前職業을 알려주는 <표 11>에서도 나타난다.

借地農의 部落內居住年數를 볼 때 그 60.6%가 原住民이고 小作農의 前職業의 82.1%가 農業이었다는 事實은 農地改革으로 分配받거나 또는 그 以前에 形成된 自由로운 分割地所有農民이 零落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2>는 打租法의 경우의 小作料率이다. <표 12>를 보면 79.4%가 50%를 차지하고 거의 大部分은 現物納이다.

이같이 小作料率 50% 現物納이라는 것을 가지고 日帝下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日帝下 半封建的 小作과의 同質性을 主張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서는 두가지 點에서 크게 差異가 있다.

&lt;표 9&gt; 임차 종류별 호당 평균 임차 면적

단위 : 평

① 소작 농 평균 임차면적				② 고지 농위 토농 평균 임차면적	③ 소작농과 평균 임차면적	(①+②) 고지농평균 임차면적	(①+③) 소작농과 임차면적	(①+②+③) 임차농평균 임차면적
	순소작농 평균임차 면적	소자작농 평균임차 면적	자소작농 평균임차 면적					
1,516	1,887	1,916	1,017	2,071	1,140	1,563	1,520	1,562

비고 임차농 종류별 임차 총면적을 임차 종류별 농가호수로 나눈 것임.

&lt;표 10&gt; 임차자별 부탁내 거주년수

단위 : 호

( )내 %

	소작 농				고	지	위	토
		순 소	소	자				
월 주 민	703 (60.6)	153 (46.2)	202 (62.5)	348 (66.8)	35 (68.6)	— (13)	171 (46)	— (46)
6. 25후	103 (8.9)	23 (7.0)	32 (9.9)	48 (9.5)	1 (2.0)	— (1)	15 (6.6)	— (5)
4. 19후	300 (25.9)	142 (42.9)	75 (23.2)	83 (16.4)	14 (27.5)	— (5)	26 (11.4)	— (5)
할 수 없음 대답 없음	54 (4.7)	13 (3.9)	14 (4.3)	27 (5.3)	1 (2.0)	— (1)	15 (6.6)	— (4)
계	1,160 (100.0)	331 (100.0)	323 (100.0)	506 (100.0)	51 (100.0)	— (19)	227 (100.0)	— (60)

&lt;표 11&gt; 소작농 종류별 전직업 구성

단위 : 호

( )내 %

부	직	농	업	상	업	공	업	공	무원	회	사원	교	원	농	업	동	기	타	일	수	업	대	답	없	음	계
순소작	7 (2.1)	233 (70.4)	10 (3.0)	2 (0.6)	8 (2.4)	2 (0.6)	— (—)	22 (6.7)	24 (7.3)	8 (2.4)	15 (4.5)	331 (100.0)														
소자작	8 (2.5)	271 (83.9)	6 (1.9)	3 (0.9)	2 (0.6)	3 (0.9)	— (—)	5 (1.5)	12 (3.7)	4 (1.2)	9 (2.8)	323 (100.0)														
자소작	8 (1.6)	488 (88.5)	7 (1.4)	1 (0.2)	9 (1.8)	4 (0.8)	1 (0.2)	5 (1.0)	5 (1.0)	3 (0.6)	15 (3.0)	506 (100.0)														
소작농 계	23 (2.0)	952 (82.1)	23 (2.0)	6 (0.5)	19 (1.6)	9 (0.8)	1 (0.1)	32 (2.8)	41 (3.5)	15 (1.1)	39 (3.4)	1,160 (100.0)														

첫째는 日帝下의 小作農은 純小作이 支配的이고 兼業所得도 없어 小作料라는 것이 그들의 全剩餘勞動에 該當되는 것이었지만 現在의 借地農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들의 剩餘勞動의 一部라는 것이고 日帝下에 比하여 料率의 引下도 나타나고 다른 한편 生產性의 增大로 借地農의 手中에 남는部分이 日帝下의 그것보다는 增加하였다는 事實이다. 이 事實은 封建的 隸從關係의 解體의 所產生 同時에 過去에 비하여 農村賃金이 上昇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農村賃金의 上昇趨勢에서 미루어 볼 때借地農은 賃金勞動者로 轉換될 可能性과 함께 小作料率은 小作農의 反撥도 커질 것이므로 점차 引下되어 갈 것으로 展望된다.

## 4. 地主의 性格

小作農의 來歷과 現行小作關係의 實態를 보아오는 가운데 農地개혁이 후의 地主에 대한

&lt;표 12&gt; 打租法의 경우 小作料率(件數別)

( )내 %

道 別	10%	20%	30%	33%	40%	50%	60%	70%	일수없음 대답없음	계
全 國 合 計	1 (0.2)	4 (0.7)	35 (5.9)	24 (4.0)	27 (4.5)	473 (79.4)	4 (0.7)	1 (0.2)	27 (4.5)	596 (100.0)
京 関	—	—	12 (10.2)	14 (11.9)	4 (3.4)	86 (72.9)	—	—	2 (1.7)	118 (100.0)
서 울	—	—	3 (27.3)	—	—	2 (18.2)	—	—	6 (54.5)	11 (100.0)
江 原	—	—	2 (1.7)	—	2 (1.7)	109 (93.2)	—	1 (0.9)	3 (2.6)	117 (100.0)
忠 北	1 (1.9)	—	1 (1.9)	—	2 (3.8)	43 (82.7)	1 (1.9)	—	4 (7.7)	52 (100.0)
忠 南	—	1 (2.3)	6 (13.6)	10 (22.7)	3 (6.8)	23 (52.3)	—	—	1 (2.3)	44 (100.0)
全 北	—	—	1 (1.9)	—	4 (7.4)	47 (87.0)	—	—	2 (3.7)	54 (100.0)
全 南	—	—	4 (4.5)	—	3 (3.4)	79 (88.7)	3 (3.4)	—	—	89 (100.0)
慶 北	—	2 (2.8)	5 (6.9)	—	5 (6.9)	51 (70.8)	—	—	9 (12.5)	72 (100.0)
慶 南	—	1 (2.6)	1 (2.6)	—	4 (10.3)	33 (84.6)	—	—	—	39 (100.0)

性格이 概略의 으로는 밝혀졌다. 이를 더 具體化 하기 위하여 필자등이 遂行社 「농지임차 관계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그 實態를 알아보자.

調查에 나타난 現地主의 特徵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地主의 土地所有規模

첫째로, 大土地所有가 아니라는 데 그 特徵을 볼 수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不在地主의 土地所有規模를 보면 3ha以上 10%, 2~3ha 22%, 2ha未滿이 68%로 나타나 있고 在村地主의 경우 農村에 살면서도 農民이 아닌 在村 非農民地主는 3ha以上은 없고 2~3ha 5%, 1~2ha 35%, 1ha未滿이 60%이며, 營農을 하면서 地主를 兼하는 農民地主는 3ha 以上 4.9%, 2~3ha 24.4%, 2ha未滿이 70.7%로 나타나 어느 경우에나 2ha未滿이 대부분이며 3ha以上은 不在地主일 경우 10%, 農民地主일 경우 4.5%이고 非農民地主는 全然 없다. 그리고 不在地主일 경우 3ha以上이 10%로 된 것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 鄉校, 寺刹, 宗中, 部落團體等의 土地所有가 이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地主의 土地所有規模가 零細한 것은 小作禁止와 번번한 農地改革說, 3町步 上限線등의 作用과 함께 家族勞動의 限界를 넘는若干의 土地를 貸與하고 있다든지 借地料取得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賽蓄手段으로서의 土地取得이 그 動機로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現 地主의 職業別 分布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표 14> 農業이 35.5%로 首位로 되어 있고 商業 16.5%, 會社員 9.6%, 宗中 4.2%, 無職 3.4%, 其他비스業 3.2%, 勞動 3.1%의 順으로 되어 있다. 農業 35.5% 無職 3.4%라는 것이 바로 土地를 세로이 取得하였거나 家口員의 出稼로 土地가 家族勞動力의 限界를 넘었을 때 資本主義의 經營으로

&lt;표 13&gt;

不在地主	3ha以上	10%
	2~3ha	22%
	2ha未滿	68%
在村地主의 所有規模	3ha以上	0%
	2~3ha	5%
	1~2ha	35%
	1ha未滿	60%
農民地主	3ha以上	4.9%
	2~3ha	24.4%
	2ha未滿	70.7%

註) 不在地主와 在村地主와의 區分은 다음표와 같음.

註) 地主의 所在地

計	모르겠다 무응답	같은 부락	이웃 부락	이웃 면	이웃 읍	시도청 소재지	서울 및 도시
100.0	1.1	37.4	16.2	6.6	5.8	13.9	18.9
在村地主 60.2					不在地主 38.6		

&lt;표 14&gt; 地主의 職業(小作件數別)

農業	商業	工業	公務員	會社員	教員	農業勞動	勞動	其他서비스業	無職
35.5	16.5	2.5	7.7	9.6	2.8	0.2	3.1	3.2	3.4
宗中	部落團體	公共機關	寺刹	天主數	鄉校	學校	信協	모르겠다 무응답	計
4.2	1.3	0.2	1.5	1.9	0.2	0.1	0.2	6.0	100.0

發展될 條件을 缺如함으로써 이를 雇傭勞動에 의한 資本主義의 經營이나 雇役에 의한 地主經營을 하는 代身에 土地를 貸與하여 借地料를 取得하는 地主로 된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資本主義經濟構造가 가져다 준 分割地 所有의 發展에 대한 갖가지 制限이 이런 結果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地主들이 비록 封建的인 風俗 慣習을 지니고 日帝下에서와 같은 5割의 高率小作料를 받아 간다고 해서 이들을 封建的 寄生地主라고 規定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分割地所有下에서는 封建的 殘滓를 가지는 것이一般的이라고 한다면 이를 過渡期의 屬性으로 把握해서 無理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小作人의 立場에서 본 生產物의 50%라는 現行小作料의 高率性은 農村勞賃과 그의 指標가 되는 農民의 生活水準의 低位性에서 緣由되는 것이고 地主의 立場에서 볼 때 그같은 小作料가 地價에 대한 利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農產物 價格의 低位性과 地價의 暴騰에 起因된다. 이같은 狀況은 巴로高度化된 資本主義를 外國에 둔 小農의 借地農과 地主와의 關係를 特徵的으로 나타내는데 不過한 것이다.

商業 16.5%는 多分히 前期의 資本에 의한 土地蠶食에 의해 形成된 寄生地主의 性格을 되고 在村地主들과 비슷한 小作慣行에 의해 小作關係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때의 借地農이 身分의 隸從이 있는 獨立된 自由農民이라는意义上에서 이 地主를 日帝下의 寄生地主와 같은

자리에 놓아 封建 的 寄生地主라고 말할 수는 없다. 會社員, 公務員, 教員, 勞動, 農業勞動 등을 職業으로 하는 地主 23.4%는 多分히 貯蓄을 그 主要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15&gt; 地主의 農地取得動機 및 目的(件數別)

(農地改革後 새로 사서 小作준 것에 限함)

(단위 : 件)

道別	糧食調達	財產形成	不動產機	親支	戚援	其 他	알수없음 대답없음	計
全國平均	110 (18.5)	354 (59.4)	50 (8.4)	51 (8.6)	15 (2.5)	16 (2.7)	596 (100.0)	
京畿	17 (12.1)	87 (61.7)	23 (16.3)	9 (6.4)	2 (1.4)	3 (2.1)	141 (100.0)	
서울	5 (12.2)	15 (36.6)	15 (36.6)	2 (4.8)	1 (2.4)	3 (7.3)	41 (100.0)	
江原	15 (26.3)	35 (61.4)	1 (1.8)	4 (7.0)	—	2 (3.5)	57 (100.0)	
忠北	4 (13.8)	18 (62.1)	3 (10.3)	2 (6.9)	1 (3.4)	1 (3.4)	29 (100.0)	
忠南	10 (24.0)	22 (53.7)	3 (7.3)	2 (4.9)	1 (2.4)	3 (7.3)	41 (100.0)	
全北	21 (31.8)	38 (57.6)	—	4 (6.1)	3 (4.5)	—	66 (100.0)	
慶北	16 (25.0)	34 (53.1)	1 (1.6)	8 (12.5)	4 (6.3)	1 (1.6)	64 (100.0)	
慶南	8 (17.0)	30 (63.8)	2 (4.3)	4 (8.5)	2 (4.3)	1 (2.1)	47 (100.0)	

農地改革後 土地를 새로 사서 小作을 준 小作件數 가운데 地主의 農地取得動機와 目的 을 <표 15>에서 보면 現物借地料로써 食糧調達을 目的으로 한다고 하는 借地料 取得을 目的으로 한 地主는 全體의 18.5%에 不過하고 그 59.4%가 貯蓄으로서의 財產形成에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投機의 目的이 8.4%, 親戚支援을 動機로 한 地主가 8.6%나 된다.

이럴 수 있는 것은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에 있어 婚戚關係를 가진 地主가 40.3%나 되니 이것은 곧 理解가 되는 것이다.

借地料 關係를 보면 打租法의 경우 小作件率 50%가, 總小作件數의 79.4%, 物納의 總小作件數의 80.7%로서 日帝下의 그것과 비슷하고 農地稅, 水利組合費 및 雜負擔에 있어 小作農이 全額負擔하는 경우는 農地稅는 總小作件數中 37.3%, 水利組合費는 總小作件數中 1%로 日帝下의 小作農의 租稅公課 全額負擔이 46%였던 것에 비하면 약간 負擔이 떨어졌다<sup>7)</sup>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小作種類別 構成에서도 볼 수 있는데 定租法 50.2%, 打租法 44.4%, 執租法 2.2%, 小作料免除 2.6%로 나타나 있는데 日帝下에서는 定租法 19.2%, 執租法 28.2%, 打租法 41.7%<sup>8)</sup>로 많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즉 日帝下에서 가장 적었던 定租法이 現在는 가장 많고 日帝下에는 執租法이 28.2%나 되던 것이 現在는 2.2%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過去에 대해서 小作料가 경감된 셈이고 그 方法에 있어 若干은近代化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1929年, pp.230~232 中「小作地の負擔狀況」参照

8) 李勳求, 「朝鮮農業論」1935年 pp.300~301

&lt;표 16&gt;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件數別)

(單位 : 件)

타인	부자식	형제	8이 촌내	8이 촌상	외척	처가위	사돈	종증	알수없음 대답없음	계
801 (59.7)	11 (0.8)	117 (8.7)	182 (13.6)	33 (2.5)	36 (2.7)	65 (4.8)	18 (1.3)	59 (4.4)	20 (1.5)	1,342 (100.0)

그리고 <표 15>에서 보는 農地取得動機나 目的에 따라 小作料 負擔에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借地料로서 食糧을 確保하려고 한 地主일수록 高率이고, 不動產 投機를 目的으로 한 地主가 小作人負擔은 제일 적게 하고 있으며, 친척보조를 목적으로 한 地主일수록 小作人의 雜負擔이 크다. 食糧確保를 目的으로 하는 地主의 前期的 性格을 엿볼 수 있는데 不在地主일수록 親戚에게 小作시키는 傾向으로 보아서 在村 非農民地主에게서 이같은 傾向을 엿볼 수 있다.

小作期間에 關해서 보면 期間을 定하지 않은 것이 67.7%, 1년으로 定한 것은 26%이며, 95.9%가 口頭契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小作禁止에 관한 法律條項과 빈번한 農地改革說이 地主들로 하여금 그같은 처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以上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오늘날의 地主는 日帝下의 封建的 寄生地主와는 크게 다르다. 全體經濟構造와 農業內部의 變化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前期的 資本의 活動領域과 農村勞動力의 流出口를 가지지 못하는 조건이 存立하는 限 地主의 土地所有는 不可避의 인 것이라 地主가 出現되는 것이지만 支配的 生產樣式인 獨立自營農의 分割地 所有의 過渡的性格을 地主라고 해서 外面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現在 憲法과 農地改革法의 小作禁止條項 및 農地改革法의 3ha上線이 有名無實화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갖는 意味는 아직은 있어 地主의 前期的 屬性에 하나의 制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小數者에 의한 토지집병을 막아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條項때문에 小作權을 保護받지 못하고 小作料率에 대한 法的 規制를 하지 못하여 小作農이 더 많은 苦痛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法의 副作用이라고나 할 것이다.

그리하여 現時點에서는 法의 偉力이 弱化되면 地主의 前期的 性格이 強化되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封建的 寄生地主로 復歸되지는 않을 것이다.

## 5. 結論

現行 小作關係의 實態와 地主의 性格을 보아오는 동안에 오늘날 韓國의 小作關係를 두고 封建의인 것이라고 規定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것을 資本制의 貸借關係라고 規定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小作은 分割地 所有에 대한 前期的 資本의 蠶食에 의해誕生된 小農의 借地農이며 이것이 비록 封建的 風俗, 習慣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封建制의 農業에서 資本制의 農業으로 移行하는 過渡的 中間的 形態라는 結論에 到達한다.

달라진 地主의 性格에서도 그려하지만 封建的 隸農과는 判異한 自由로운 小農의 借地農이 그것을 跃然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에 나타나는 小作料의 範疇는 小作料 成의 배카니즘에서 볼 때 最劣等地에서는 絶對地代로 類推되고(資本制下의 平均利潤 超過分인 絶對地代는 아님) 優等地에서는 여기에 差額地代로 類推되는 것이 加算된 것이다.勿論 이것은 價値的 觀點에서 본 範疇規定은 아니고 이것은 「過渡的 地代」, 「小農的 地代」로

一括하여 獨立的으로 表示하는 方法밖에 없다.

즉 小農的 借地農은 그와 對立하는 地主의 土地所有가 實存할 때 最劣等地 혹은 가장不利한 生產條件下에 있는 借地小農은 地主의 土地所有가 創造한 借地料를 地主에게 支拂하게 되고 그 以上의 優等地에 있어서는 最劣等地에 의해서 規定된 價格으로부터 個別의 費用價格을 控除한 殘餘分 全部를 土地所有者에게 支拂하게 된다. 그리하여 全剩餘勞動을 吸收할만큼 小作料가 높다는 것은 小作料가 剩餘價值의 通常의 支配的 形態로서의 本源的地代인 封建的 地代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程度의 小作料를 支拂하고도 그들은 韓國經濟構造 그 自體에 의해서 規定된 低劣한 農村的 賃金水準의 生活을 再生產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事實에 있어서 이 小農的 借地農에게 土地를 貸與한 地主가 家族勞動의 限界를 若干 넘는 分割地農民, 그리고 商人등에 의한 分割地蠶食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 地主는 封建的 地主는 아니었다.

이러한 小農的 借地農에 대하여 絶對的 制限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分割地 農民에 있어서와 같이 農產物價格에서 本來的 費用을 控除하면 나머지는 自己自身에게 支拂되는 労質이라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支拂하는 借地料는 그 自身에 있어서 生產物의 費用價格要素로 된다. 그리하여 最劣等地를 耕作하는 借地小農은 地主의 土地所有가 創造한 借地料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以上의 優等地를 耕作하는 借地小農은 最劣等地에 의해 規定된 價格으로부터 個別의 費用價格을 控除한 殘餘分 全部를 土地所有者에게 小作料로서 支拂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이 小作料가 封建的 地代일 수 없고 同時に 資本制的 地代일 수 없는 中間形態인 過渡的 地代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